

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운영규칙

제정 2023. 2.24.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의료원 교원인사규정」 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사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, 운영 및 심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.

1. 교원의 신규임용
2.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
3. 부교수 이상 교원의 정년보장임용
4. 기타 교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 3 조(구성) 위원회의 위원은 8인 내외의 위원으로 의과대학장이 위촉한다.

제 4 조(위촉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, 부위원장은 교무부학장이 된다. 다만,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에는 위원 중 간사 1인을 둔다.

제 5 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6 조(기밀유지)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공식 발표 이외 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.

제 7 조(심사기준) 교원의 임용 심사기준은 의료원 교원임용규칙에 따른다.

제 8 조(보칙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